

#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인정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제도에 관한 규정

제정 2014. 10. 12

**제1조 (목적)** 학회 인정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제도는 치과 임플란트학의 발전과 그 치료의 높은 수준 유지 및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학회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공헌하는 것이 그 설립목적이다

**제2조 (선정방법)** 우수임플란트임상의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그 자격을 신청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합격하여야 한다.

1.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인정 신청서 (학회양식)
2. 이력서 및 임상 증례 목록
3. 본 학회 회원 증명서 (학회양식)

**제3조 (임무)** 우수임플란트임상의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 및 강연
2. 회원 자격 인정 필요시의 연수

**제4조 (심사위원회)** 치과 임플란트학을 교육함에 있어서 충분한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가진 자를 우수임플란트임상의로 선발하여 학회가 인정하고 관장하기 위하여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5조 (심사위원회 사업)**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신청자의 심사, 인정 및 등록
2. 자격상실의 심사
3. 기타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제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회 위임사항

**제6조 (심사위원 선출)** 우수임플란트임상의의 심사위원은 학회의 이사회에서 정하고 평의원회에서 인준한 시행 세칙에 준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 (심사위원의 자격과 임기)** 위원은 인증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그 이하의 조직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 부 칙

제 1조 첫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심사위원회 위원은 인증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 2조 본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후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실시 시행세칙

제정 2014. 10. 12  
 개정 2014. 12. 09  
 개정 2015. 11. 23

## 1. 자격 인정 방법

- (1) 학회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제 경비를 납부하여 위원회가 필요한 심사를 시행한다.
  - ① 지원자는 임플란트 치료 10증례 자료집을 제출해야 한다.
    - 가. 증례기록지와 술전, 술후 임상사진 또는 방사선사진 첨부
  - ② 기존 인증의는 임상증례 보고는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자격 신청서 제출 시에 평생회비 등 제반 경비 납부해야 한다.
    - 총 90만원 (평생회비 75만원, 심사비 10만원, 교부료 5만원)
    - 자격 취득 후 5년마다 갱신 시 재심사교부료 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④ 회비 면제자는 제반 경비를 65만원으로 한다.
- (2) 학회로부터 인정받은 우수임플란트임상의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 (3) 자격증 발행일은 4월 1일과 10월 1일로 한다.

## 2. 자격 인정 기준

- (1) 대한민국 치과의사로서 본 학회 3년 이상 계속 회원이어야 한다.
- (2) 위원회 결의로 동등 자격을 받은 자는 별도로 정한다.
- (3) 상기 항 중에서 소정의 점수를 취득한 자로 최종 결정한다.
  - 그 갱신은 5년마다 실시한다.

## 3. 자격 기준

- (1) 학회 인정 점수 85점 이상 가진 자로 한다.
- (2) 평점 내용

분 류	내 용	단 위	취 득 점 수
학회 회원 기간	3년 이상	1년당	2점 (최대10점)
치료증례	임플란트 치료 10증례	1증례당	5점 (최대50점)
국내 학회 발표 <small>(본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small>	심포지엄 연자	1회당	10점
	자유연제 연자		5점
	학술집담회 연자		5점
	본 학회 연수회 연자		5점
국외 학회 발표	임플란트 관련	1회당	10점
논문(학회지)발표 <small>(임플란트 관련 논문/ 임상증례 발표 포함)</small>	1인 단독	1회당	10점
	2인 공저		7점
	3인 공저		5점
	4인 이상 공저		3점
	중설 및 증례보고		3점

<b>대학 강의</b>	임플란트 관련 강의	1학기당	15점
<b>본 학회 행사 참석</b>	춘계,추계 학술대회	1회당	10점
	학술강연회,학술집담회		2점
	연수회	1일당	2점
<b>국제학회 행사 참석</b> (본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	국제대회	1회당	5점

#### 4. 자격 상실

- (1) 본인이 자격 사퇴를 신청한 경우
- (2) 치과의사 면허를 상실한 경우
- (3) 학회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4) 우수임플란트임상의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5)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 부 칙

- 1) 본 세칙 개정(2015.11.23)의 적용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4. 10. 12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우수임플란트임상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진료 능력을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자격)

1. 우수임플란트임상의의 자격을 취득 또는 자격갱신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우수임플란트임상의 보수교육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최근 5년간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보수교육 5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2. 치과대학 및 의과대학의 임플란트 관련학과의 교수(공직치과의사회 가입자). 그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는 평점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3.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해당기간만큼 갱신기간을 연장하며 해당자는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개별심사 후 사정을 거쳐 학회장은 자격증을 갱신 교부한다.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자격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의 만료 2개월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 사본
2. 보수교육 평점 기록지
3. 보수교육 평점이수 증명서
4. 사진(반명함판) 1매

**제5조 (보수교육)** 보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우수임플란트임상의 보수교육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다.

## 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1. 자격을 취득한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는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자격이 자동 정지된다. 단 3년 내에 자격갱신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2. 3년 내에 추가 응시하지 않을 시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자격을 다시 신규 취득하여야 한다.

## 제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1.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자격을 상실하며, 3년간 자격갱신을 재신청할 수 있다.
2.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우수임플란트임상의의 자격을 신규 취득하여야 한다.

## 제8조 (보칙)

1.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2. 본 세칙의 개정은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

## 부 칙

제1조 본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우수임플란트임상의 보수교육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4. 10. 12  
 개정 2015. 02. 10  
 개정 2015. 11. 23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인정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제도에 관한 규정 중 보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보수교육의 대상은 치과의사로서 본 학회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주관)** 보수교육은 학회장의 감독 하에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심사위원회가 주관 실시한다.

**제4조 (교육기관)**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1)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 (2)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관 및 단체

**제5조 (등록비)**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제대금,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평점)**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자격 갱신에 필요한 자는 5년 동안 50점을 득해야 하며, 이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보수교육

분 류	내 용	단 위	갱신점수
<b>국내 학회 발표</b> <small>(본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small>	심포지엄 연자	1회당	10점
	자유연제 연자		5점
	학술집담회 연자		5점
	본 학회 연수회 연자		5점
<b>국외 학회 발표</b>	임플란트 관련	1회당	10점
<b>논문(학회지)발표</b> <small>(임플란트 관련 논문/ 임상증례 발표 포함)</small>	1인 단독	1회당	10점
	2인 공저		7점
	3인 공저		5점
	4인 이상 공저		3점
	중설 및 증례보고		3점
<b>본 학회 행사 참석</b>	춘계,추계 학술대회	1회당	10점
	학술강연회,학술집담회	1일당	2점
	연수회		2점
<b>국제학회 행사 참석</b> <small>(본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small>	국제대회	1회당	5점

- (2) 학술대회 참가자는 우수임플란트임상의 보수교육 교육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학술 대회 참가자를 말한다.

- (3) 연수회 및 학술집담회는 본 학회에서 주관 또는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 (4)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강좌는 심사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도 있다.

**제7조 (기록보관)** 위원회는 보수교육에 관한 제반서류를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보칙)** 경과 조치로 다음과 같이 우수임플란트임상의를 부여한다.

- (1) 비회원은 경과규정에 의해 2015년 춘계학술대회 이전에 본 학회에 가입하면 우수임플란트 임상의의 지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 (2) 본 학회의 기존 인증의 및 장기회원(기준: 5년간 회비납부 회원)들도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신청하면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 (3) 본 보칙의 경과 조치는 2015년 9월 30일로 만료한다.

## 부 칙

제1조 본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세칙 개정(2015.11.23)의 적용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